



금융위원회

보도자료



보도

2019.6.11.(화) 14:30

배포

2019.6.11.(화)

책 임 자	금융위 감독제도팀장 이 동 엽(02-2100-2591)	담 당 자	김 동 현 사무관 (02-2100-2593) 이 영 평 사무관 (02-2100-2592) 김 수 빈 사무관 (02-2100-2594)
	금융위 지배구조팀장 고 상 범(02-2100-2520)		반 준 성 사무관 (02-2100-2525) 홍 연 제 사무관 (02-2100-2521)
	금감원 금융그룹감독실장 이 영 로(02-3145-8200)		김 형 원 팀 장 (02-3145-8204)

제 목 : 「금융그룹 CEO·전문가 간담회」를 개최하여 모범규준 1년 시범적용 성과를 평가하고, 앞으로 금융그룹 감독을 보다 내실있게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.

- ◆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'19.6.11(화) 「금융그룹 CEO·전문가 간담회」를 개최하여
 - 지난 1년간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해온 「금융그룹감독제도」의 시범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모범규준 운영 방안을 논의하였음
- ◆ 최종구 위원장은 법제정 전까지는 모범규준을 통해 금융그룹감독제도를 운영할 예정임을 밝히고, 금융그룹 리스크관리를 위한 CEO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하였음
- ◆ 향후 운영방안과 관련하여 ①금융그룹 감독대상 지정, ②자본적정성 기준 구체화 방안, ③위험관리실태 평가방안 등이 논의되었음
 - 금융위원회는 6월중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모범규준을 개정하고, 7월부터는 시범운영 연장에 들어갈 예정임

I

간담회 개요

-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'19.6.11(화),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추진중인 「금융그룹감독제도」의 추진상황을 점검*하기 위해 「금융그룹 CEO·전문가 간담회」를 개최하였음

* 18.7월 모범규준을 제정하여 7개 금융그룹 대상으로 금융그룹감독 시범적용 중

-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난 1년간의 금융그룹감독제도 시범운영 성과 및 보완필요사항을 공유하고, 향후 모범규준 운영방안 등을 논의하였음

< 간담회 개요 >

▣ 일시 / 장소 : 2019.6.11(화) 14:30 ~ 15:30 / 금융위원회 대회의실

▣ 참석자

- 금융위 : 금융위원장, 상임위원, 감독제도팀장, 지배구조팀장
- 금감원 : 수석부원장, 금융그룹감독실장
- 업계·전문가 : 주요 금융그룹 대표회사(삼성생명, 한화생명, 미래에셋대우, 교보생명, 현대캐피탈, DB손보, 롯데카드) 대표이사 / 교수·변호사·연구원 등 민간 전문가

▣ 논의내용 : 모범규준 시행 1년 성과점검 및 향후 운영방안

■ 금융위원장 말씀요지 ■

- ① **[제도도입 노력·평가]** 금융위원장은 그룹 위험관리체계 구축 등 지난 1년간 모범규준 적용의 성과를 평가하고 금융그룹감독 제도의 정착을 위해 금융그룹, 정부 모두 좀 더 분발하자고 당부함
- ② **[제도 운영방향]** 정부는 금융그룹감독 법제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되, 法 제정까지는 모범규준을 통한 금융그룹감독을 계속 시행하고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지원해 나갈 것임을 밝힘
 - 금융그룹감독은 국제 금융감독규범으로서 IMF FSAP*을 계기로 한국 금융그룹감독제도의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는 한편,
 - * IMF는 '13년 한국 금융부문평가(FSAP: Financial Sector Assessment Program)에서 금융그룹감독제도 개선 촉구 → 현재 '19년 FSAP에서 정부의 이행현황 점검 중
 - 금년 하반기에는 모범규준을 바탕으로 금융그룹감독제도가 보다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만전을 기할 것임을 강조
- ③ **[당부말씀]** 금융그룹감독은 금융그룹 스스로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 필요한 만큼, 금융그룹 리스크 요인에 대해 금융그룹의 선제적이고 실질적인 리스크관리를 당부하였음
 - 또한, 금융그룹 동반부실로 인해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했던 사례를 거울삼아, 투명한 지배구조와 경영에 대한 시장의 요구를 염두에 두고 개선노력을 꾸준히 기울일 것도 주문하였음

II 시범운영 성과 및 보완필요사항

- ◇ 지난 1년간 「금융그룹감독제도」의 큰 틀을 마련*
 - * 제도 도입방안 발표(18.1월) → 모범규준 시범적용(18.7월) → 법 제정안 발의(18.6·11월)
- ◇ 금융그룹은 모범규준을 토대로 그룹리스크 관리를 위한 기반 구축과 운용 등 다각적인 노력을 추진해 옴
 - 금융당국도 현장점검(18.8~11월, 금감원) 등을 통해 제도 시행현황을 살펴보고,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컨설팅 제공 등 지원*
 - * 금융그룹 임직원 대상 세미나(18.4월), 교육연수 프로그램(19.5월) 등도 활용
- ◇ 앞으로도 리스크관리 세부기준 마련, 그룹리스크 현황점검 등을 통해 현장에서 금융그룹감독제도의 원활한 작동과 정착 추진

1. 지난 1년간 현장의 변화

① 그룹리스크 관리를 위한 하드웨어 구축과 리스크 관리 시작

- **[조직·업무절차 정비]** 금융그룹별 전담부서 설치(18년말, 7개 그룹 총 45명), 위험관리협의회 구성(금융계열사 참여), 내부규정 정비 등 그룹리스크 관리를 위한 기본체제 마련
 - 금융그룹감독 준비상황 이사회 보고, 위험관리협의회 개최를 통한 업무방향 협의 등 위험관리업무 시작*
 - * 일부 그룹은 통합위험 조기경보시스템 구축, 그룹차원 스트레스 테스트 등도 실시
- **[감독당국 체계정비]** 감독조직 신설, 감독부서간 협업 등을 통해 제도도입에 추동력 부여
 - * 금융위 금융그룹감독혁신단(17.12), 금감원 금융그룹감독실(18.1), 「위·원감독협의체」(18.4)

② 실무진부터 경영진까지 그룹리스크 관리에 대한 공감대 기반 형성

- 금융당국·금융그룹 간 소통을 강화하고, 금융그룹 실무TF 운영, 경영진 면담(18.9.13~12.4)을 통해 그룹건전성 관리의 필요성 등 공유*
 - * (1) 그룹리스크 관리 전문인력 지속 확보 (2) 그간 소홀했던 해외법인의 그룹위험 관리 등

③ 금융그룹의 건전성, 리스크관리 현황 등 현주소 파악

- 금융당국은 7개 금융그룹의 제도준비 현장지원('18.8~11월), 업무 보고서 분석 등을 통해 금융그룹의 건전성 및 리스크관리 현황 파악

- '18.12말 금융그룹 평균 자본비율(중복자본 차감 후)은 244% 수준*

* 전이위험 등 반영시 하락요인 있음

2. 보완이 필요한 과제

① 주요 금융그룹의 잠재 위험요인에 대한 선제적 관리

- 그룹리스크관리 기준을 적용하여 리스크 내용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점검
- 점검결과 파악된 잠재적 리스크요인에 대해서는 금융그룹의 선제적 관리 노력이 필요

< 금융그룹의 잠재적 리스크요인 (예시) >

(1) 금융계열사 우회·교차출자를 통한 중복·과다자본

(2) 非금융계열사와의 과도한 내부거래*

* 금융계열사 매출이 비금융계열사 영업에 의존, 계열사와 공사·전산용역 수행, 부동산 등 인수 후 운영권 계열사 임대 등

(3) 금융계열사 공동투자 등으로 인한 집중위험

(4) 금융계열사 출자지분을 담보로 한 자금차입 등

② 금융그룹의 실질적인 그룹리스크관리 정착과 제도화

- 「금융그룹감독」이 시범적용을 거쳐 정규 리스크 관리·감독 제도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법제화가 필요
- 금융그룹 스스로도 리스크관리 세부기준을 마련하고, 그룹 차원의 위기상황분석과 대응방안 수립 등 노력 필요

※ 금감원은 금융그룹 위기상황분석(stress test) 모형 개발 및 금융그룹 제공 추진

③ 국제규범과의 정합성 제고를 위한 노력 지속

- '19년 IMF 금융부문평가(FSAP)에서 금융그룹감독 도입을 위한 한국의 정책이행이 주요이슈 중 하나로 점검 중

※ '13년 평가시 IMF는 국내 금융그룹의 위험관리·감독에 대해 개선 촉구

- 모범기준을 통해 금융그룹감독 사각지대를 해소*한 정책노력을 적극 설명하고, 금융감독을 한 단계 선진화하는 계기로 활용

* 금융지주형태의 금융그룹에 대한 감독제도는 '00년 도입하여 정착

- ◇ '19.7.1일 만료예정인 모범규준을 개정·연장하여 지속 적용
* 明日(6.12일) 금융위 의결 예정 (별도 보도자료 배포)
- ◇ 모범규준을 토대로 ①감독대상 지정, ②자본적정성 기준, ③위험 관리실태 평가 등 향후 금융그룹감독 운영방안 구체화

1. 감독대상 지정

1. **현행 감독대상 지정요건** (모범규준 § 5)

- (지정요건) ①복합금융그룹*, ②자산총액 5조원 이상, ③인·허가 및 등록 금융회사 1개 이상 → 모두 충족시 감독대상 지정

- 최상위금융회사(사실상 가장 큰 영향력 행사)를 대표회사로 선정

※ 금융그룹	(공정거래법상)기업집단 내 금융회사 집단(금융회사가 20이상 있는 경우)
복합금융그룹	여수신·금투·보험 중 2이상의 업을 영위하는 금융그룹

- (감독대상 제외) 지정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다음의 경우는 제외

- ①금융지주·국책은행(산은·수은·기은) 그룹, ②구조조정진행 그룹, ③감독실익이 적은 그룹(업권별 자산·자본 비중, 시장점유율 등 고려)

2. **감독대상 지정요건 운영방안**

- 모범규준 제정시('18.7월) 지정요건 충족 금융그룹 중 비주력업종 자산규모 5조원 이상 7개 그룹을 시범운영 대상으로 지정

- 금년에도 모범규준에 따른 시범운영 기간인 점을 감안하여 현행기준 유지

- 향후 法 제정시 국제적 기준 등을 감안하여 제외요건 등 감독대상 지정요건을 보다 구체화*할 예정

* 비주력업종의 규모 뿐 아니라 비주력업종의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

- ※ 감독대상 금융그룹의 지정은 공정위의 공시대상기업집단 현황 발표 (매년 5.1~15일) 후 매년 1회(6월) 검토·발표

2. 자본적정성 기준 구체화

1. 자본적정성 기준 운영현황

- (기준개요) 금융부문 전체의 손실흡수능력(적격자본)을 업권별 자본 규제에서 요구하는 최소기준 합계(필요자본) 이상으로 유지

$$\text{자본 비율} = \frac{\text{적격자본 (자본합계 - 중복자본^① 차감)}}{\text{필요자본 (최소요구자본 + 집중위험^② + 전이위험^③ 가산)}} \geq 100\%$$

- ① **중복자본** : 금융계열사간 출자 등 자본 과다계상을 야기하는 가공의 자본
- ② **집중위험** : 금융그룹의 위험노출액이 특정분야에 편중되어 금융그룹의 지급여력이나 재무상태를 위태롭게 할 만큼의 충분한 위험
- ③ **전이위험** : 동일그룹내 특정 계열사의 부실이 금융부문 전체로 전이되는 위험

- (운영현황) 현재 중복자본 차감, 전이위험*은 자본적정성 평가기준 초안에 따라 그룹별 자본비율에 반영하고 내부 모니터링 중

* 전이위험은 평가지표 보완중인 점을 감안하여 중간 평가등급인 3등급으로 일괄적용 중

- 다만, 집중위험은 「금융그룹감독법안」 등에 대한 국회논의와 연계하여 검토 필요 ※ 현재 집중위험은 미적용

2. 향후 운영방안

- ◇ 중복자본 차감, 전이위험 산정방법에 관한 기준을 구체화하여, 보다 체계적인 그룹별 자본비율 산정·관리 추진

- (중복자본) 다양한 자본거래*에 대한 중복자본 기준 마련('19.下)

* 금융계열사간 직접출자가 아닌 경우(예: 교차·우회출자)에도 손실흡수능력이 제약되는 경우 자본에서 제외 → 손실흡수능력 제약 등 자본여부 판단기준 마련

- (전이위험) 전이위험 평가항목 지표를 보완하고, 필요자본 가산 산정방식 구체화 ('19.下)

※ 금감원 모의평가('19.5~6월)와 연구용역('19.6월~) 진행 예정

⇒ '20년 상반기, 보완된 기준에 따라 그룹별 자본비율 산정 추진

※ 전이위험 평가 운영방안

진행경과

- ① 전이위험 평가방안 초안 공개('18.7.2일, 모범규준 발표시)
- ② 초안을 토대로 연구용역 실시('18.하) → 평가모형 보완·재설계

1 (평가체계) [전이위험] ∝ [^①위험전이 가능성·크기 × ^②위험노출액]

- ① 위험전이 가능성을 설명하는 대안지표(상호연계성·이해상충 가능성·위험관리체계)들로 평가항목·지표 구성
→ 평가등급(1~5등급) 산정 (위험전이 가능성·크기 ↑ → 평가등급 ↑)
- ② 평가등급에 따라 위험노출액(총위험자산 or 최소요구자본)에 비례하여 필요자본에 가산

2 (평가항목) 3대 부문 7개 평가항목 구성 (정량지표 중심 + 정성지표)

[전이위험 평가항목 : 초안 vs. 현재 수정안]			
< '18.7월 초안 >		< 현재 수정안 > (참고2)	
평가부문		평가부문	평가항목
위험관리체계	대표회사 이사회 권한·역할	상호연계성	① 계열사 출자관계
	그룹위험 모니터링		② 내부거래 규모·의존도
전이위험관리	그룹위험 관리정책, 절차 및 한도	이해상충가능성	③ 비금융계열사 부실화위험
	내부거래·위험집중 관리		④ 금융그룹 소유구조
	소유·지배구조	⑤ 이해상충 방지정책	
이해상충 방지		위험관리체계	⑥ 대표회사 이사회 권한·역할
			⑦ 그룹리스크 정책·절차

3 (필요자본 산정) 전이위험 평가등급에 따라 필요자본 가산

< 전이위험 종합평가등급에 따른 필요자본 가산비율 예시('18.7월 초안) >

구분	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5등급
^(1안) 총위험자산	0.5%	1%	1.5%	2%	2.5%
^(2안) 업권별 최소요구자본 합	5%	10%	15%	20%	25%

4 (평가주기·주체) 매년 1회*, 금감원 실시

* 매년 상반기 1회 평가 실시 → 매분기 자본적정성 비율 산정시 동일 등급 반영

⇒ 금감원 모의평가('19.5~6월)와 추가 연구용역('19.6월~)을 통해 평가항목·지표 보완 및 필요자본 가산 산정방식 구체화 ('19.下)

⇒ '20년 상반기부터 전이위험 평가 실시 및 자본적정성 비율 반영

3. 위험관리실태 평가 운영방안

진행경과

- ① 위험관리실태 평가기준 초안 공개('18.7.2일 모범기준 발표시)
- ② 금융그룹감독 시범운영 이행상황(위험관리실태) 현장점검 실시('18. 8~11월)
→ 현장점검 결과 및 금융그룹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안 마련

1. 평가체계

- 4개 부문, 11개 평가항목으로 구성하여 평가
→ 항목별 등급을 가중평균하여 종합등급(5등급 15단계) 산출
- 평가부문·평가항목은 국제기준(Joint Forum 주요원칙, 2012)을 참고하여 설정
- 금융그룹의 위험관리 역량에 대한 평가가 초점인 점을 감안, 정성평가 중심으로 실시 (일부 정량지표는 참고지표로서 활용)

< 위험관리실태 평가 주요 평가부문 > (☞ 참고3)

1. 위험관리체계 (30%)	■ 대표회사 이사회 권한·역할 ■ 리스크 정책 및 절차
2. 자본적정성 (20%)	■ 자본구조 ■ 자본정책
3. 위험집중·내부거래 (20%)	■ 위험집중 ■ 내부거래
4. 소유구조·이해상충 (30%)	■ 소유구조 ■ 이해상충 방지체계

2. 평가결과 활용

- 금융그룹 건전성 감독 및 상시적 그룹리스크 관리에 활용
- 평가결과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 각 금융그룹이 그룹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활용 (컨설팅, 개선권고 등)
- 종합등급이 일정 수준(4등급) 이하인 금융그룹에 대해서는 경영 개선계획 제출을 권고

3. 평가주기

- 은행지주 경영실태평가와 유사하게 금융그룹별 2~3년에 1회 실시
※ 전이위험 평가시기와 겹치는 경우 통합 실시

⇒ '19년 하반기부터 매년 2~3개 금융그룹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위험관리실태 평가실시 및 종합등급 산출

1. 「금융그룹감독제도」 법제화 추진

- 정무위 공청회 개최(하반기) 등 국회 입법논의를 적극 지원

2. 「모범규준」 운영 관련 일정

- ① 「모범규준」 개정·연장* 금융위 의결 (6.12일)

* 감독대상 금융그룹 재지정

- ② 「모범규준」 연장 시행 (7.2일~)

- ③ 금융그룹 자본적정성 등 세부기준 구체화* (하반기)

* ① 중복자본 기준 마련, ② 전이위험 평가모형 구체화 및 그룹별 모의평가 실시

- ④ 금융그룹에 대한 위험관리실태 평가 순차적 실시 (하반기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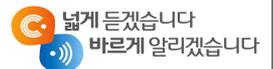
※ 내년 상반기 중 금융그룹별 자본적정성 비율 산정

별첨 : 금융위원장 모두말씀



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
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 변 인
prfsc@korea.kr



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

- 「동양그룹 문제 유사사례 재발방지 종합대책」에 ‘금융그룹에 대한 종합감독시스템 도입’ 포함 (‘13.11.21)
- IMF, 한국의 금융부문에 대한 평가(FSAP)에서 「금융그룹감독제도」 도입 촉구 (‘13.12.24)
- ‘15년, ‘16년 금융위 업무계획에 「금융그룹감독」 내용 포함 (‘15.1.29, ‘16.1.27)
- 「금융그룹감독」이 국정과제의 하나로 선정 (‘17.7.19)
- 「금융그룹 통합감독방안 공청회」 개최 (‘17.9.27, 금융연구원 주최)
- 「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도입방안」 발표 (‘18.1.31)
- 모범규준 초안 발표(‘18.4.2) · 최종안 확정 (‘18.6.27)
- 7개 주요 금융그룹을 대상으로 모범규준 시범운영 실시 (‘18.7.2)
- 「금융그룹감독법」 제정안 발의 (‘18.6.29 박선숙 의원, 11.16 이학영 의원)
- 7개 주요 금융그룹의 제도준비 현장점검 · 지원 실시 (‘18.8~11월)
- 그룹 임직원의 위험관리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실시 (‘19.5.16~17, 금융연수원)

부 문	평가 항목
상호 연계성	<p>계열사 출자관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금융계열사가 보유한 비금융계열사 지분 비중 (금융계열사 자기자본 대비) 금융·비금융 계열사간 소유·출자 구조의 복잡성
	<p>내부거래 규모 및 의존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상품·용역 내부거래 비중 금융그룹 자기자본 대비 대주주 등 신용공여 비중 내부거래의 건전성
	<p>비금융계열사 부실화 위험</p>
이해 상충 가능성	<p>금융그룹 소유구조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대표회사의 금융그룹 지분 비중(자본금 대비) 비금융계열사의 금융그룹 지분 비중 소유구조의 안정성
	<p>이해상충 방지정책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내부거래정책의 적절성 임원보상 체계·정책의 적절성 내부거래에 대한 내부통제 시스템의 적정성 공정위 등의 위법행위 제재여부 비금융계열사와의 임원 겸직 및 인사교류 현황 이익배당 결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
위험 관리 체계	<p>대표회사 이사회 권한 및 역할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대표회사 이사회 그룹위험관리 운영의 적정성 대표이사 이사회 그룹위험관리 권한 등 체계의 적정성
	<p>그룹리스크 정책 및 절차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그룹위험 정책 및 관리의 적정성 그룹의 주요 위험에 대한 모니터링 및 대응체계의 적정성

참고 3

위험관리실태 평가기준 초안 - 수정안 비교

계량지표

초안		수정안		
평가 부문	평가 항목	평가 부문	평가 항목	
위험 관리 체계 (30%)	대표회사 이사회의 권한 및 역할 (10%)	위험 관리 체계 (30%)	대표회사 이사회의 권한 및 역할 (20%)	1. 대표회사 이사회의 그룹위험관리 운영의 적정성
				2. 대표회사 이사회의 그룹위험관리 권한 등 체계의 적정성
	그룹 리스크정책 절차 및 한도 (10%)		그룹리스크 정책 및 절차 (10%)	3. 그룹위험 관리정책 및 한도관리의 적정성
				4. 위험관리 조직 및 인력의 적정성
그룹위험 모니터링 (10%)	5. 그룹의 주요 위험에 대한 모니터링 및 보고의 적정성	4. 그룹의 주요 위험에 대한 모니터링 및 대응체계의 적정성		
			6. 위기상황 대응체계의 적정성	
자본 적정성 (20%)	자본구조 (10%)	자본 적정성 (20%)	자본구조 (10%)	1. 자본의 손실흡수 가능성
				2. 자본의 과다계상 가능성
	자본정책 (10%)		자본정책 (10%)	3. 내부자본 인식 및 평가의 적정성
				4. 자본적정성 유지정책의 타당성
위험 집중 · 내부 거래 (20%)	위험 집중 관리 (10%)	위험 집중 · 내부 거래 (20%)	위험집중 (10%)	1. 위험집중 관리의 적정성 - (참고지표) 대주주 익스포져 비율
				2. 금융그룹의 위험집중 인식·평가·관리의 적정성
	내부 거래 관리 (10%)		내부 거래 (10%)	3. 그룹내 내부거래로 인한 금융그룹 부실가능성
				4. 그룹내 내부거래기준 및 운영의 적정성
지배 구조 · 이해 상충 (30%)	소유· 지배구조 (15%)	소유 구조 · 이해 상충 (30%)	소유구조 (10%)	1. 소유·지배구조의 안정성 및 투명성
				2. 재무적 위험요인(Risk factor)의 전이가능성
	그룹 이해상충 방지체계 (15%)		이해상충 방지체계 (20%)	3. 그룹의 잠재적 이해상충에 대한 인식·평가·관리의 적정성
				4.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체계의 적정성
				3. 대주주 관련 내부통제체계의 적정성